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조직을 흡수·통합하는 내용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과 직무를 확대·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5급 2명, 6급 10명, 7급 7명, 8급 5명, 연구관 9명, 연구사 43명, 전문경력관 10명)을 증원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9. 2. ~ 9.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무란 중 “연구”를 “연구·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제작”으로 하고,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명”을 “122명”으로 한다.

별표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란 중 “3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으로, “4급 이하 공무원”을 “3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5